

일본의 지방세제

양 인 병

행정안전부 공인회계사

I . 전체 조세체계(국세+지방세)

()안은, 헤세이 18연도(2006년) 세수입액, 단위 : 조엔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등	계
국세		소득세(17.0) 법인세(14.9)	소비세(10.5), 휘발유세(2.9), 주세(1.5), 담배세(0.9), 자동차 중량세(1.1) 석유가스세(0.03)등	상속세(1.5), 등록 면허세(0.7)등	
		개인31.5% 법인27.6%			
		59.1%(32.0)	35.8% (19.3)	5.1%(2.7)	(54.1)
지방	도부현	법인 사업세(5.4) 개인 도부현민세(2.7) 법인 도부현민세(1.1), 도부현세 이자비율(0.2) 개인 사업세(0.2)	지방 소비세(2.6) 자동차세(1.7) 경유 인수세(1.1) 자동차 취득세(0.5) 도부현 담배세(0.3)등	부동산 취득세(0.5)등	
		개인18.8% 법인39.8%			
		58.6%(9.6)	38.0%(6.2)	3.4%(0.5)	(16.3)
	시정촌	개인 시읍면민세(6.2), 법인 시읍면민세(2.8)	시읍면 담배세(0.9) 경자동차세(0.2)등	고정 자산세(8.6) 도시 계획세(1.2) 특별토지보유세(0.0) 사업소세(0.3)등	
		개인30.9% 법인14.1%			
		45.0% (9.1)	5.2% (1.0)	49.9%(10.1)	(20.2)
		51.1% (18.6)	19.9% (7.3)	29.1%(10.6)	(36.5)
총계		(55.9)	(29.4)	(14.7)	(90.6)

- 우리나라가 지방세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하듯이 일본은 도부현세와 시정촌세로 분류 하고 일본은 2002년 기준으로 47개의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와 3,223개의 기초자치단체(시정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가 우리나라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로 다른 세목을 가지고 있음. 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동경도 특별구의 경우 시정촌 세목 과 다른 세목으로 구성됨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헤세이 18연도(2006년) 세수입액기준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등	계
국	63.20%	72.80%	20.50%	59.70%
도부현	18.90%	23.30%	4.10%	18.00%
시읍면	17.90%	3.90%	75.40%	22.30%
지 방	36.80%	27.20%	79.50%	40.30%
계	100.0%	100.0%	100.0%	100.0%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추이분석〉

(단위: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3	2005
국 세	65.2	62.0	58.1	58.4	58.5	60.0
지방세	34.8	38.0	41.9	41.6	41.5	40.0

- 일본은 19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지방세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규모 추이〉

(단위: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중 앙	47.1	44.3	48.9	48.1
지 방	52.9	55.7	51.1	51.9

- 일본의 전체 지방재정규모는 중앙정부를 능가함.

※ 참고 : 기타 유럽 국가들의 중앙·지방 정부지출 비중

(2004년 기준, 단위 : %)

국 가	중앙정부	지 방		
		주정부	지방정부	합 계
벨기에	57.1	28.9	14.0	42.9
덴마크	50.9		49.1	49.1
독 일	41.1	37.9	21.0	58.9
스페인	42.9	40.4	16.7	57.1

국 가	중앙정부	지 방		
		주정부	지방정부	합 계
프랑스	68.8		31.2	31.2
이탈리아	62.7		37.3	37.3
네덜란드	62.3		37.7	37.7
오스트리아	63.8	19.4	16.8	36.2
스웨덴	56.8		43.2	43.2
영 국	75.9		24.1	24.1
노르웨이	72.5		27.5	27.5

II. 지방세의 체계

1. 지방세 구성

(세수입액은 헤세이 18연도(2006년) 결산액, 단위 : 억엔, %)

구 분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등	합 계
지방세계	186,428(51.1)	72,534(19.9)	106,100(29.1)	365,062(100.0)
도부현세	95,684(58.6)	62,074(38.0)	5,485(3.4)	163,243(100.0)
시정촌세	90,744(45.0)	10,460(5.2)	100,614(49.9)	201,819(100.0)
직 접 세	개인 주민세 법인 주민세 개인 사업세 법인 사업세	자동차세 경자동차세 광산물세 수 렷 세 광 구 세	고정 자산세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 특별 토지보유세 수리이익세등	305,990 (83.8)
간접세등		지방 소비세 지방 담배세 경유 인수세, 입탕세 자동차 취득세 골프장 이용세	부동산 취득세	59,071 (16.2)

2. 지방세 세목별 내용

■ 개인 주민세

- 개인의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는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개인주민세”라고 함.
- 도나 구시정촌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밀착된 행정서비스의 소요경비를 주민에게 그 능력(담세력)에 따라 널리 분담시키는 것임

(1) 균등할 및 소득비율

구 분		개인 주민세	(참고) 소득세(국세)																																	
과세 주체		부과기일(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시(구) 도시와 시골 및 도도부현	국																																	
납세의무자		1월 1일 현재 시정촌·도도부현내에 주소를 가지는 개인등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개인등																																	
과세 방식		3월 15일까지 전년도 1년간 소득을 1월1일 현재의 주소지 구시정촌에 신고함. 단,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마친 분은 신고할 필요가 없음. 급여소득 또는 공적연금 관련 소득뿐인 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잡손공제나 의료비공제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함	신고납세 방식																																	
과세표준		(전년도의 총 소득금액 등(※)-소득공제액) (※)합산해서 소득할액이 계산되는 소득 <table><tr><th>소득의종류</th><th>소득금액의 계산방법(개요)</th></tr><tr><td>배당소득</td><td>수입금액-원본취득부채이자</td></tr><tr><td>부동산소득</td><td>총수입금액-필요경비</td></tr><tr><td>사업소득</td><td>총수입금액-필요경비</td></tr><tr><td>급여소득</td><td>수입금액-급여소득공제</td></tr><tr><td>양도소득</td><td>총수입금액-(취득비+양도비용등)</td></tr><tr><td>일시소득</td><td>총수입금액-필요경비등</td></tr><tr><td>잡소득</td><td>총수입금액-필요경비등</td></tr></table>	소득의종류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개요)	배당소득	수입금액-원본취득부채이자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급여소득	수입금액-급여소득공제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취득비+양도비용등)	일시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등	잡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등	소득금액(현년)																	
소득의종류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개요)																																			
배당소득	수입금액-원본취득부채이자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급여소득	수입금액-급여소득공제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취득비+양도비용등)																																			
일시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등																																			
잡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등																																			
세율	소득 비율	< 종합과세분 > <table><tr><th rowspan="2"></th><th colspan="3">표준 세율</th></tr><tr><th>(도도부현)</th><th>(시정촌)</th><th>(합계)</th></tr><tr><td>일률</td><td>4%</td><td>6%</td><td>10%</td></tr></table> < 분리과세분 > 과세 장기 양도소득 금액 <table><tr><th></th><th>(도도부현)</th><th>(시정촌)</th><th>(합계)</th></tr><tr><td>일률</td><td>2%</td><td>3%</td><td>5%</td></tr></table>		표준 세율			(도도부현)	(시정촌)	(합계)	일률	4%	6%	10%		(도도부현)	(시정촌)	(합계)	일률	2%	3%	5%	<table><tr><th>과세 총소득 금액등</th><th>세율</th></tr><tr><td>195만엔 이하</td><td>5%</td></tr><tr><td>330만엔 이하</td><td>10%</td></tr><tr><td>695만엔 이하</td><td>20%</td></tr><tr><td>900만엔 이하</td><td>23%</td></tr><tr><td>1,800만엔 이하</td><td>33%</td></tr><tr><td>1,800만엔초과</td><td>40%</td></tr></table> 과세 장기 양도소득 금액 일률 15%	과세 총소득 금액등	세율	195만엔 이하	5%	330만엔 이하	10%	695만엔 이하	20%	900만엔 이하	23%	1,800만엔 이하	33%	1,800만엔초과	40%
		표준 세율																																		
(도도부현)		(시정촌)	(합계)																																	
일률	4%	6%	10%																																	
	(도도부현)	(시정촌)	(합계)																																	
일률	2%	3%	5%																																	
과세 총소득 금액등	세율																																			
195만엔 이하	5%																																			
330만엔 이하	10%																																			
695만엔 이하	20%																																			
900만엔 이하	23%																																			
1,800만엔 이하	33%																																			
1,800만엔초과	40%																																			
균 등 할	균 등 할	<table><tr><th></th><th>표준 세율(연액)</th></tr><tr><td>도도부현</td><td>1,000엔</td></tr><tr><td>시읍면</td><td>3,000엔</td></tr></table>		표준 세율(연액)	도도부현	1,000엔	시읍면	3,000엔																												
	표준 세율(연액)																																			
도도부현	1,000엔																																			
시읍면	3,000엔																																			

구 분	개인 주민세	(참고) 소득세(국세)
소득공제	· 기초공제 33만엔 · 배우자 공제 33만엔 · 부양 공제 33만엔 · 특정 부양 공제 45만엔 등	· 동좌 38만엔 · 동좌 38만엔 · 동좌 38만엔 · 동좌 63만엔 등
세액공제	① 조정 공제: － 소득세보다 주민세 쪽이 기초공제나 부양공제 등의 인적공제액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세원이양을 실시할 때 세율변경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부담증가를 피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주민세의 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되었을 경우, 단순히 소득세의 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되는데 그친다면, 인적공제액의 차의 합계액에 5%를 곱한 분만큼 세부담이 증가함. － 이와 같은 부담증가를 조정하기 위해 주민세 소득할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임	
	② 이중 부담의 조정을 위한 공제:	
	· 배당 공제 · 외국 세액 공제 · 배당할액 공제 · 주식등 양도소득할액 공제	· 배당 공제 · 외국 세액 공제
세수입 (2006결산)	91,105억엔 〔 균등할2,366억엔, 소득비율85,063억엔, 이자비율1,595억엔, 〕 배당비율1,121억엔, 주식등 양도소득비율961억엔	170,635억엔 (소득 양여세 포함한다) (소득 양여세30,094억엔)

(2) 이자비율, 배당비율 및 주식 등 양도소득비율

항목	이자비율	배당비율	주식 등 양도소득비율
과세 주체	도도부현		
납세의무자	이자 등의 지불을 받는 개인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의 지불을 받는 개인	상장주식 등의 양도의 대가 등의 지불을 받는 개인
과세 표준	지불을 받아야 할 이자 등의 액	특정 배당 등의 금액	주식 등의 양도소득의 금액
세 율	5%(소득세15%)	5%(소득세15%)	5%(소득세15%)

항목	이자비율	배당비율	주식 등 양도소득비율
징수 방법	금융기관 등이 이자지급 시에 징수하여, 지급 금융기관의 영업소 소재지 도도부현에, 다음 달의 10일까지 납입	배당 등을 지급하는 주식회사 등이 그 지불 시에 징수해, 그 지불을 받는 사람의 지불시의 주소지의 도도부현에, 징수의 다음달의 10일까지 납입	증권 회사가 주식 양도의 대가 등의 지불 시에 징수하여 지불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시점 주소지의 도도부현에, 징수의 다음 해의 1월 10일까지 납입
교 부 금	이자할액으로부터 징세비상당액(1%)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5분의 3을 시정촌에 교부	배당비율 수입액으로부터 징세비상당액(1%)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5분의 3을 시읍면에 교부	주식등 양도소득비율 수입액으로부터 징세비상당액(1%)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5분의 3을 시정촌에 교부
	각시정촌에는, 해당 시읍면과 관련되는 개인 도부현민 세수입 결산액의 한계에 대한 비율(전년도 이전 3년도 분의 평균치)에 따라 배분		
세수입 (2006결산)	1,595억엔	1,121억엔	961억엔

■ 법인 주민세

- 도도부현세와 시정촌민세의 2종류가 있으며, 각각 “법인세할”과 “균등할”로 구성되어 있음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도도부현 및 시정촌
납세의무자	도도부현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법인이나 인격이 없는 사단 등, 또는 도내에 기숙사, 보양소, 숙박소, 클럽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도 균등할만은 과세됨
과세 방식	법인의 사업세와 똑같이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과세표준 (법인세할)	연결 신고 법인 이외의 법인 : 법인세액(세액공제하기 전 세액) 연결 신고 법인 : 개별 귀속 법인세액

항 목	내 용																					
세 율	① 균등할 ;																					
	자본금등의 액		시정촌세 균등할																			
			종업원수 50인 초	종업원수 50사람 이하																		
	50억엔초과		80만엔	300만엔	41만엔																	
	10억엔초과~50억엔 이하		54만엔	175만엔																		
	1억엔초과~10억엔 이하		13만엔	40만엔	16만엔																	
	1천만엔초~1억엔 이하		5만엔	15만엔	13만엔																	
	1천만엔 이하		2만엔	12만엔	5만엔																	
	※ 시읍면민세 균등할에 대해서는, 제한세율(1.2배)이 있음																					
	② 법인세할 ; 도도부현민세 : 5%(제한세율6%) 시정촌세 : 12.3%(제한세율14.7%)																					
분할 기준	20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법인은, 과세표준을 종업원수에 의해 분할 해 각 도도부현 또는 각시정촌(시읍면)에 납부																					
세수입 (2006결산)	<table><tr><td colspan="2">-</td><td>세수입액</td><td>집초과 과세 수입액 (실시 단체수)</td></tr><tr><td rowspan="2">법인 도도부현민세</td><td>균등할</td><td>1,451억엔</td><td>62억엔(17)</td></tr><tr><td>소득할</td><td>9,721억엔</td><td>1,326억엔(46)</td></tr><tr><td rowspan="2">법인 시정촌세</td><td>균등할</td><td>4,051억엔</td><td>146억엔(408)</td></tr><tr><td>소득할</td><td>24,309억엔</td><td>3,171억엔(1,022)</td></tr></table>				-		세수입액	집초과 과세 수입액 (실시 단체수)	법인 도도부현민세	균등할	1,451억엔	62억엔(17)	소득할	9,721억엔	1,326억엔(46)	법인 시정촌세	균등할	4,051억엔	146억엔(408)	소득할	24,309억엔	3,171억엔(1,022)
-		세수입액	집초과 과세 수입액 (실시 단체수)																			
법인 도도부현민세	균등할	1,451억엔	62억엔(17)																			
	소득할	9,721억엔	1,326억엔(46)																			
법인 시정촌세	균등할	4,051억엔	146억엔(408)																			
	소득할	24,309억엔	3,171억엔(1,022)																			

■ 개인 사업세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도도부현
납세의무자	도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설립하고 법정업종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 현재 법정업종에는 70개 업종이 있는데 거의 모든 사업이 여기에 해당됨.

항 목	내 용												
과세 방식	8월에 도세사무소·지청에서 송부되어 오는 납세통지서에 따라 8월과 11월에 연2회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되는 분은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소득 등을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단, 소득세나 주민세의 신고를 필한 분은 개인의 사업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음 (a)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이 사업주공제액 290만엔을 초과하는 분 (b) 이월공제 등을 받는 분												
과세 표준	과세표준산식 = {①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 ②소득세의 사업전종자급여(공제)액 - ③개인사업세의 사업전종자급여(공제)액 + ④청색신고특별공제액 - ⑤손실이월 등의 공제금액 - ⑥사업주공제액} 〈산식설명〉 ①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 전년도 1년간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함. 이 계산방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국세)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과 동일함 ②③사업전종자급여액 : 사업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전적으로 그 사업에 종사할 때에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④청색신고특별공제액 : 개인의 사업세에는 소득세의 청색신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⑤손실이월 등의 공제금액 : 사업소득등이 적자일 때 다음해 이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⑥사업주공제액 : 공제액은 연간 290만엔(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액)												
법정업종과 세율	<table><tr><th>구 분</th><th>세율</th><th>사업의 종류</th></tr><tr><td>제1종 사업(37업종)</td><td>5%</td><td>물품판매업,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등</td></tr><tr><td>제2종 사업(3업종)</td><td>4%</td><td>축산업, 수산업, 신탄제조업</td></tr><tr><td>제3종 사업(30업종)</td><td>5%</td><td>의료업, 수의업, 변호사업 등</td></tr></table>	구 분	세율	사업의 종류	제1종 사업(37업종)	5%	물품판매업,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등	제2종 사업(3업종)	4%	축산업, 수산업, 신탄제조업	제3종 사업(30업종)	5%	의료업, 수의업, 변호사업 등
구 분	세율	사업의 종류											
제1종 사업(37업종)	5%	물품판매업,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등											
제2종 사업(3업종)	4%	축산업, 수산업, 신탄제조업											
제3종 사업(30업종)	5%	의료업, 수의업, 변호사업 등											

■ 법인 사업세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도도부현
납세의무자	도도부현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마련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법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
과세 객체	법인이 실시하는 사업(단,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비과세) 1) 임업, 광물의 굴채사업 및 특정의 농사 조합 법인이 실시하는 농업 2) 나라,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 3) 사회 복지 법인, 종교 법인, 학교 법인 등의 법인이나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익 사업 이외의 것

과세 방식	도세사무소(도세지소) · 지청에 법인의 도민세와 함께 신고 · 납부함 (신고의 종류) 1)확정신고 2)중간 신고{전년도의 실적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당기 가결산} 3)기한 후 신고 4)수정 신고																																																													
과세표준 및 세율 (*)자본의 금액과 소득규모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불균일과세함 ※ 헤세이20년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적용	<table><tr><th>법인 구분</th><th>과세표준</th><th colspan="2">세 율</th></tr><tr><td rowspan="5">자본금 1억엔초과의 보통법인</td><td>부가 가치액</td><td>부가가치비율</td><td>0.48%</td></tr><tr><td>자본금액</td><td>자본비율</td><td>0.2%</td></tr><tr><td rowspan="3">소득 및 청산 소득</td><td>소득비율;</td><td></td><td></td></tr><tr><td>년400만엔 이하의 금액</td><td>1.5%</td><td></td></tr><tr><td>년400만엔 초과 ~ 800만엔 이하의 금액</td><td>2.2%</td><td></td></tr><tr><td></td><td>년800만엔을 넘는 금액 및 청산 소득</td><td>2.9%</td><td></td></tr><tr><td rowspan="3">자본금 1억엔 이하의 보통법인 공익 법인등 투자 법인등</td><td rowspan="3">소득 및 청산 소득</td><td>소득비율; 소득 중</td><td></td><td></td></tr><tr><td>년400만엔 이하의 금액</td><td>2.7%</td><td></td></tr><tr><td>년400만엔 초과 ~ 800만엔 이하의 금액</td><td>4%</td><td></td></tr><tr><td></td><td></td><td>년800만엔 초과 금액 및 청산 소득</td><td>5.3%</td><td></td></tr><tr><td rowspan="2">특별법인</td><td rowspan="2">소득 및 청산 소득</td><td>소득비율;</td><td></td><td></td></tr><tr><td>년400만엔 이하의 금액</td><td>2.7%</td><td></td></tr><tr><td></td><td></td><td>년400만엔 초과 금액 및 청산 소득</td><td>3.6%</td><td></td></tr><tr><td>전기 및 가스 공급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td><td>수입금액</td><td>수입비율 수입금액</td><td></td><td>0.7%</td></tr></table>	법인 구분	과세표준	세 율		자본금 1억엔초과의 보통법인	부가 가치액	부가가치비율	0.48%	자본금액	자본비율	0.2%	소득 및 청산 소득	소득비율;			년400만엔 이하의 금액	1.5%		년400만엔 초과 ~ 800만엔 이하의 금액	2.2%			년800만엔을 넘는 금액 및 청산 소득	2.9%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보통법인 공익 법인등 투자 법인등	소득 및 청산 소득	소득비율; 소득 중			년400만엔 이하의 금액	2.7%		년400만엔 초과 ~ 800만엔 이하의 금액	4%				년800만엔 초과 금액 및 청산 소득	5.3%		특별법인	소득 및 청산 소득	소득비율;			년400만엔 이하의 금액	2.7%				년400만엔 초과 금액 및 청산 소득	3.6%		전기 및 가스 공급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수입금액	수입비율 수입금액		0.7%	(주1) 세율은 표준세율(제한세율은 표준 세율의1.2배). (주2) 특별법인이란, 협동조합 등 및 의료법인을 말한다.	
법인 구분	과세표준	세 율																																																												
자본금 1억엔초과의 보통법인	부가 가치액	부가가치비율	0.48%																																																											
	자본금액	자본비율	0.2%																																																											
	소득 및 청산 소득	소득비율;																																																												
		년400만엔 이하의 금액	1.5%																																																											
		년400만엔 초과 ~ 800만엔 이하의 금액	2.2%																																																											
	년800만엔을 넘는 금액 및 청산 소득	2.9%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보통법인 공익 법인등 투자 법인등	소득 및 청산 소득	소득비율; 소득 중																																																												
		년400만엔 이하의 금액	2.7%																																																											
		년400만엔 초과 ~ 800만엔 이하의 금액	4%																																																											
		년800만엔 초과 금액 및 청산 소득	5.3%																																																											
특별법인	소득 및 청산 소득	소득비율;																																																												
		년400만엔 이하의 금액	2.7%																																																											
		년400만엔 초과 금액 및 청산 소득	3.6%																																																											
전기 및 가스 공급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수입금액	수입비율 수입금액		0.7%																																																										
분할 기준	20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법인은 과세표준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관계 도도부현별로 안분한 후 각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다.																																																													
	사 업	분 할 기 준																																																												
	비제조업※	과세표준의 1/2	:	사무소수 과세표준의 1/2 : 종업원수																																																										
	제조업	종업원수(자본금 1억엔 이상의 법인 :공장의 종업원수를1.5배)																																																												

	사 업	분 할 기 준
	철도 사업 궤도 사업	궤도의 연장 킬로미터수
	가스 공급업 창고업	사무소등의 고정자산의 가액
	전기 공급업	과세표준의 3/4 : 사무소등의 고정자산으로 발전소의용으로 제공하는 것의 가액 과세표준의 1/4 : 사무소등의 고정자산의 가액
	(주)전기 공급업의 분할 기준에 대해서는, 당분간, 경과 조치가 설치되고 있다. ※ 철도 사업·궤도 사업, 가스 공급업·창고업 및 전기 공급업을 제외	
세수입 (2006결산)	53, 627억엔 (집초과 과세 수입액 : 1, 295억엔(7 단체 실시))	

■ 지방 소비세

- 일본은 1997년 4월 부가가치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면서 부가가치세의 공동세방식으로 세수의 20%만큼을 지방소비세로 도입함. 당시 일본의 지방세는 도도부현은 소득과 세에 시정촌의 경우 재산과세로 세수비중이 편중되어 있었음.
-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형 국가 중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과 일본으로 두 국가 모두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음. 연방제 국가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나라는 독일, 캐나다임.
- 스페인의 경우 2002년에 부가가치세의 공동세 형태로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2002년 조세개편으로 지방소득세율의 강화, 개별 소비세의 신설 및 강화 등으로 지방세를 대폭 강화하여 조세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지방세비중이 25.9%에서 2003년 43.3%로 급격히 증가함.
- 참고로 부가가치세율과 관련하여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헝가리, 덴마크, 스웨덴으로 25%의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도입초기(1989년)표준세율이 3%로 가장 낮았고, 1998년에 5%로 인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제 개혁(지방세원 확충)으로 지역간 편차가 시정됨.
 - ⇒ 1인당 지방세 변이계수는 버블경제 이전인 1985년도 0.352에서 2004년도에 0.274로 저하함
 - ⇒ 최고인 동경도와 최저인 오키나와의 차이는 4.39배에서 2.98배로 축소
- 일본의 지방소비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와 함께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1차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귀속시키는데 여기(지방소비세의 징수측면)까지만 본다면 생산지원칙에 따른다고 볼 수 있지만, 징수 후 지방자치단체간 소비지출지수(①소비지출통계기준, ②인구기준, ③종업원 수 기준을 6/8 : 1/8 : 1/8 으로 가중평균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징수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지방소비세의 소비지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 징수단계에서부터 소비지과세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판매될 때, 국가간 수출처럼 영세율을 적용하고 물품 반입지역에서 다시 지방소비세율을 적용해야 하나 이를 실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97년 도입된 일본의 지방소비세는 다음과 같음.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도도부현	
납세의무자 (양도비율) (화물비율)	과세 자산의 양도등 (역무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실시한 사업자 과세 화물을 보세지역(외국 화물을 수입 신고전에 장치 할 수 있는 장소)으로부터 인수하는 사람	
과세 방식 (양도비율) (화물비율)	당분간, 세무서에 소비세와 함께 신고납부(본래 도도부현에 신고납부) 나라(세관)에 소비세와 아울러 신고 납부	
과세표준	소비세액	
세 율	100분의25(소비세율 환산 1%)	
세수입 (2006결산)	26, 289억엔	
도도부현간 청산	지방자치단체간 소비지출지수에 따라 기 징수된 지방소비세액을 정산	
	지 표	가중치
	「소매 연간 판매액수(상업 통계)」와 「서비스업대 개인 사업 수입액(서비스업 기본 통계)」의 합산액	6/8
	「인구(국세조사)」	1/8
	「종업원수(사업소 · 기업 통계)」	1/8

항 목	내 용																
	〈도도부현간 청산시기〉 <table> <tr> <th>과세 기간</th><th>청산월</th></tr> <tr> <td>1~3월까지의 소비세액</td><td>5월</td></tr> <tr> <td>4~6월까지의 소비세액</td><td>8월</td></tr> <tr> <td>7~9월까지의 소비세액</td><td>11월</td></tr> <tr> <td>10~12월까지의 소비세액</td><td>2월</td></tr> </table>	과세 기간	청산월	1~3월까지의 소비세액	5월	4~6월까지의 소비세액	8월	7~9월까지의 소비세액	11월	10~12월까지의 소비세액	2월						
과세 기간	청산월																
1~3월까지의 소비세액	5월																
4~6월까지의 소비세액	8월																
7~9월까지의 소비세액	11월																
10~12월까지의 소비세액	2월																
시정촌 교부금	도도부현간 지방소비세 청산 후 각 도도부현은 소비세의 2분의 1을 시정촌(시읍면)에 교부. 이때 인구와 종업원수로 안분. <table> <tr> <th>지 표</th><th>가중치</th></tr> <tr> <td>「인구(국세조사)」</td><td>1/2</td></tr> <tr> <td>「종업원수(사업소 · 기업 통계)」</td><td>1/2</td></tr> </table> 〔 헤세이18연도(2006연도) 교부금액 13, 062억엔 〕 〈시정촌 교부시기〉 <table> <tr> <th>과세기간</th><th>교부월</th></tr> <tr> <td>1~3월까지의 소비세액</td><td>6월</td></tr> <tr> <td>4~6월까지의 소비세액</td><td>9월</td></tr> <tr> <td>7~9월까지의 소비세액</td><td>12월</td></tr> <tr> <td>10~12월까지의 소비세액</td><td>3월</td></tr> </table>	지 표	가중치	「인구(국세조사)」	1/2	「종업원수(사업소 · 기업 통계)」	1/2	과세기간	교부월	1~3월까지의 소비세액	6월	4~6월까지의 소비세액	9월	7~9월까지의 소비세액	12월	10~12월까지의 소비세액	3월
지 표	가중치																
「인구(국세조사)」	1/2																
「종업원수(사업소 · 기업 통계)」	1/2																
과세기간	교부월																
1~3월까지의 소비세액	6월																
4~6월까지의 소비세액	9월																
7~9월까지의 소비세액	12월																
10~12월까지의 소비세액	3월																

■ 부동산 취득세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도도부현
과세 객체	부동산의 취득
납세의무자	토지와 가옥을 유상 · 무상 혹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매매, 증여, 교환, 건축(신축, 증축, 개축)등에 의해 취득한 자(개인, 법인을 불문함). 단, 상속에 의한 취득은 비과세
과세 방식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가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도세지소) · 지청에 신고하고 납부는 도세사무소 · 지청으로부터 송부되어 오는 납세통지서로, 납부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까지 납부함

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항 목	내 용
과세표준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 단, 2009년 3월 31일까지 택지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부동산 가격의 1/2을 과세표준으로 함 (*) 여기서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란 총부대신이 정한 고정자산평가기준에 의해 평가·결정된 가격으로서, 신축·증축가옥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말함. 따라서 부동산의 구입가격이나 건축공사비와는 다름. 또한 토지나 가옥을 증여받거나 교환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이 적용됨
세율	표준 세율 원칙 4% <세율의 특례> · 주택 및 토지3% (헤세이18년4월1일~헤세이21년3월31일)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의 특례	<주택·주택용지의 특례> 주 택 • 과세표준의 특례 조치 ▸ 신축 주택 → 1,200만엔을 공제 ▸ 중고 주택 → 주택의 신축 시기에 의해 최고1,200만엔까지 공제 주택용지 • 세액의 감액 조치(신축·중고 모두) 다음 (a),(b)중 많은 금액을 공제 (a) 45,000엔 (b) 토지1㎡당가격 × 주택바닥면적의 2배(1호당 200㎡가 한도) × 3%
주된 경감 조치	· SPC, 투자 법인등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의 경감 조치 · 도시 재생특별 조치법으로 규정하는 인정 계획등에 근거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의 경감 조치
과세 면세점	토지(10만엔), 가옥(신축·증축·개축-23만엔, 기타-12만엔)
세수입(2006)	4, 850억엔

■ 지방 담배세(도부현 담배세 및 시읍면 담배세)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소매 판매업자의 영업소등 소재의 도도부현 및 시읍면
과세 객체	판매하는 제조 담배
납세의무자	제조 담배의 제조자, 특정 판매업자 및 도매 판매업자
과세표준	매도한 제조 담배의 갯수
징수 방법	신고 납부

세율(엔/1,000개피당)

구 분	제 조 담 배	제조담배(구3급품)
도부현 담배세	1,074엔	511엔
시읍면 담배세	3,298엔	1,564엔
지방세 소계	4,372엔	2,075엔
나라 담배세	3,552엔	1,686엔
나라 담배 특별세	820엔	389엔
국세 소계	4,372엔	2,075엔
담배세 총합계(지방+국세)	8,744엔	4,150엔

(주) 구3급품이란, 전매 납부금 제도하에 대해3급품으로 되어 있던 에코등6종목의 지 권담배를 말한다.

(*) 참고: 담배 1상자 가격 내역 (예) 마일드 세븐(소매 정가 300엔)

세금 별도 가격분 110.84엔	
소비세	14.28엔
나라의 담배세- 87.44엔	담배 특별세 16.40엔
	담배세 71.04엔
지방의 담배세- 87.44엔	도부현분 21.48엔
	시읍면분 65.96엔

■ 골프장 이용세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도도부현
과세 객체	골프장의 이용 행위
납세의무자	골프장의 이용자
세 율	표준세율 1인 1일당 800엔 제한세율 1, 200엔
교부금	수입액 중10분의 7에 상당하는 액수를, 골프장 이용세를 납입한 골프장이 소재하는 시읍면에 교부
세수입 (2006결산)	617억엔(집교부금액427억엔)

■ 고정 자산세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전시정촌 (도쿄23구의 구역 내는 도쿄도가 과세)
과세 객체	①상각자산 토지, 가옥외의 사업용 자산으로서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한 경비를 산입하는 자산을 의미하며 건축물, 기계, 기구, 비품 등이 있음 ②토지 및 가옥
납세의무자	토지, 가옥 또는 상각 자산의 소유자
과세표준	토지, 가옥 및 상각 자산의 가격(적정한 시가) 상각자산 · 매년 1월1일 상각자산 소유자가 1월31일까지 자산소재 구의 도세사무소에 상각자산을 신고하면 자치단체가 3월말까지 상각자산 가격을 상각자산 과세대장에 등록함 토지, 가옥 · 총무장관이 정한 고정자산평가기준에 기초하여 평가된 액수를 지사 또는 시정촌장이 결정하여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하며 3년에 1번씩 평가액을 재검토함
세율	표준 세율 1.4%
납부시기와 방법	보통징수방법
세수입(2006)	8조4, 651억엔

■ 자동차세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도도부현
납세의무자	보통자동차, 이륜이외의 소형자동차의 소유자
과세 방식	보통 징수의 방법(5월말까지 도세종합사무센터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납부)
세율	<표준세율> 자동차의 종별, 배기량 등 마다 설정 <제한세율> 표준 세율의1.5배 <그린화에 의한 특례 세율> 배출 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이 뛰어난 환경 부하의 작은 일정한 자동차의 세율을 경감해, 신차신규 등록으로부터 일정 연수를 경과한 환경 부하의 큰 자동차의 세율을 무겁게 하는 특례 조치(이른바 「자동차세의 그린화」)를, 세수입 중립을 전제로 헤세이13연도에 창설.
세수입(2006결산)	17, 255억엔

(*) 자동차세의 세율표

구 분		영 업 용	자 가 용
승용차	총배기량 1,000cc이하	7,500 엔	29,500 엔
	1,000cc초과 1,500cc이하	8,500	34,500
	1,500cc초과 2,000cc이하	9,500	39,500
	2,000cc초과 2,500cc이하	13,800	45,000
	2,500cc초과 3,000cc이하	15,700	51,000
	3,000cc초과 3,500cc이하	17,900	58,000
	3,500cc초과 4,000cc이하	20,500	66,500
	4,000cc초과 4,500cc이하	23,600	76,500
	4,500cc초과 6,000cc이하	27,200	88,000
	6,000cc초과	40,700	111,000
화물차	트럭	최대 적재량 1t이하	8,000 엔
		1t초과 2t이하	11,500
		2t초과 3t이하	16,000
		3t초과 4t이하	20,500
		4t초과 5t이하	25,500
		5t초과 6t이하	30,000
		6t초과 7t이하	35,000
		7t초과 8t이하	40,500
		8t초과 (가산액)	6,300
	견인차	소형	10,200 엔
		보통	20,600
	썬우지않는인차	소형	5,300 엔
		보통(최대 적재량8t이하)	10,200
		보통(최대 적재량8t초과가산액)	5,100
	화객 겸용 가산액		
	1,000cc이하		5,200 엔
	1,000cc초과 1,500cc이하		6,300
	1,500cc초과		8,000

	구 분	영 업 용		자 가 용
버 스	30사람 이하	일반 승합용	일반 승합용 이외	33,000 엔
	30인 초과 40사람 이하	12,000 엔	26,500 엔	41,000
	40인 초과 50사람 이하	14,500	32,000	49,000
	50인 초과 60사람 이하	17,500	38,000	57,000
	60인 초과 70사람 이하	20,000	44,000	65,500
	70인 초과 80사람 이하	22,500	50,500	74,000
	80인 초과	25,500	57,000	83,000
	80인 초과	29,000	64,000	
삼륜의 소형자동차		4,500엔		6,000엔

- (주1) 영업용 : 도로 운송법 제2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및 트럭 운송 사업의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자가용 : 영업용의 자동차 이외의 모든 자동차
- (주2) 상기로 내거는 자동차에 의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의 조례에 의해 자동차의 제원(용도, 총배기량등)에 의해서 구분을 마련하고 세율을 정할 수 있다.
- (주3) 적설에 의해, 통상, 일정기간 운행할 수 없는 지역에 주된 정치장을 가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10분의3(을)를 한도)가 경감된다.
- (주4) 전기 자동차인 승용차와 관련되는 세율에 대해서는, 총배기량1,000cc이하의 구분의 세율에 의하는 것이 적당한 것.

■

자동차 취득세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도도부현
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취득자
과세 방식	<과세 객체> 자동차의 취득 (이륜의 소형자동차, 경자동차, 특수 및 소형 특수 자동차를 제외) <신고·납부> 신고 납부방식, 신고서에 증지를 붙이는 것으로 납부. 【신고서의 제출 기한】 · 신규 등록, 신규 검사 또는 사용의 신고가 되는 자동차 → 등록, 검사 또는 신고시 · 이전 등록을 해야 할 자동차 → 등록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15일 이내 · 그 외의 자동차의 취득→ 자동차의 취득일부터15일 이내

항 목	내 용
과세표준	자동차의 취득가격 (다만, 무상으로 취득했을 경우, 친족 사이에 행해지는 매매등과 같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가격에 의한다)
세율	자가용 자동차 5%, 영업용 자동차 및 경자동차 3%
저공해차에 대한 특례조치	○ 2005년의 자동차배출가스규제에 적합하고 차량 총중량이 3.6t을 초과하는 디젤차(트럭, 버스 등)로 중량차 연비기준 만족 차량 취득시 경감 ○ NOx · PM법 대책지역내에서 배출가스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특정 기준 적합차로 대체한 경우에는 경감 ○ 2009년 3월31일까지 전기 · 천연가스 ·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한 경우 경감
면세점	50만엔
세수입(2006결산)	4, 570억엔

■ 경자동차세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시정촌
과세 객체	원동기 부착 자전거, 경자동차, 소형 특수 자동차 및 이륜의 소형자동차
납세의무자	4월1일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이륜의 소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	표준 세율의 경우 (아래와 별첨참조(*))
제한세율	표준 세율의1.5배
징수 방법	보통징수방법, 구시정촌 사무소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4월 또는 5월에 납부
세수입(2006)	1, 573억엔

(*) 표준세율의 경우

구 분		표준세율
원동기 부착 자전거(125cc 이하)	총배기량50cc이하의 것 또는 정격 출력0.6kw이하의 것	1,000엔
	이륜으로 총배기량50cc초과90cc이하 또는 정격 출력0.6kw 초과 0.8kw 이하	1,200엔
	이륜으로 총배기량90cc초과 또는 정격 출력0.8kw 초과	1,600엔
	삼륜 이상으로 총배기량 20cc초과 또는 정격출력0.25kw 초과	2,500엔

외국의 지방재정 제도

경자동차 (660cc이하) 및 소형 특수 자동차	이륜 (125cc초과 250cc이하)	2,400엔
	삼륜	3,100엔
	사륜 이상	
	○ 승용 영업용, 자가용 ○ 화물용 영업용, 자가용	5,500엔 7,200엔 3,000엔 4,000엔
이륜의 소형자동차(250cc초과)		4,000엔

■ 특별 토지보유세

- 과 세 객 체** ○ 보유분 : 토지의 소유 ○ 취득분 : 토지의 취득
(취득 후10년간 과세)
- 납세의무자** ○ 보유분 : 토지의 소유자 ○ 취득분 : 토지의 취득자
- 세 액** ○ 보유분 : 토지의 취득가격 × 세율(1.4%) - 고정 자산세 상당액 = 세액
○ 취득분 : 토지의 취득가격 × 세율(3.0%) - 부동산 취득세 상당액 = 세액
- 면세점** ○ 지경도시의 구의 구역 및 특별구의 구역 2,000m²
○ 도시계획구역을 가지는 시읍면의 구역 5,000m²
○ 그 외의 시읍면의 구역 10,0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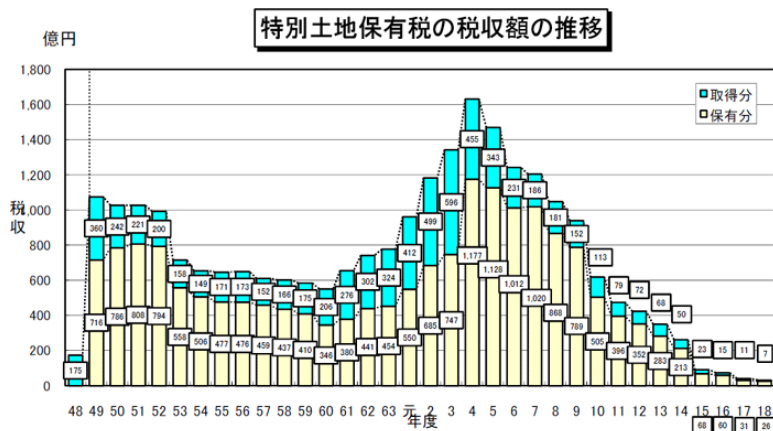
수입의 상황

(단위 : 억엔)

연 도	총 액	보 유 분	취 득 분
헤세이16연도(2006년)	74.6	59.8	14.8

징수 유예중의 토지

유예 세액 약1,300억엔(헤세이19연 3월말 현재)



■ 경유 인수세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도도부현
과세 객체	원도매업자 또는 특약 업자로부터의 경유의 인취행위
납세의무자	원도매업자 또는 특약 업자로부터 현실의 납입을 수반하는 경유의 인수를 실시하는 사람
과세표준	경유의 수량
세 율	일정한 세율 1킬로리터에 대해32, 100엔(원칙15, 000엔) (헤세이20년 5월 1일~헤세이30년 3월31일의 사이의 잠정 조치)
용 도	도로에 관한 비용
교부금	지정시를 포괄하는 도도부현은, 경유 인수세의 세수입의90%를, 그 도도부현 및 지정시가 각각 관리하는 일반 국도 및 도도부현도의 면적등에 근거해 안분해, 지정시에 교부
세수입 (2006결산)	10, 507억엔

■ 입탕세

항 목	내 용
과세 주체	광천 목욕탕 소재의 시읍면 (헤세이18연도 과세 단체수 : 975단체)
과세 객체	광천 목욕탕에 있어서의 입탕 행위
납세의무자	광천 목욕탕에 있어서의 입탕객
세율	표준 세율 1명 1일 150엔
용도	환경위생 시설, 광천원의 보호 관리 시설, 소방 시설 그 외 소방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 및 관광의 진흥(관광 시설의 정비를 포함한다.)에 필요로 하는 비용
징수방법	특별 징수
세수입 (2006결산)	250억엔

■

사업소세

- 도시환경의 정비 및 개선에 관련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지방세법으로 정해진 도시에 한해서 과세되는 시정촌세임. 23구에서는 특례로 도세로서 과세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무사시노시, 미타카시, 하치오지시, 마치다시의 4개시에서 과세되고 있음

구 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면세점
자산비율	사업자	사업소 바닥 면적	600엔/m ²	1, 000m ²
종업원비율		종업원 급여 총액	100분의0.25	100명

-

세수입(2006 결산)

기 설 분 (자산비율)	2, 176억엔 (72.1%)
(종업원비율)	840억엔 (27.8%)
신증설분	1억엔 (0.0%) →혜세이15년3월31일로서 폐지
합 계	3, 018억엔
※ 합계 및 구성비에 대해서는, 끝수 처리의 관계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세

-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세)와 보험급부와의 상대적인 대가 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피고용자 이외의 국민에 대한 의료 보장을 확보하는 제도이며, 우리 나라의 의료 보장 체계의 핵심의 하나를 이루는 의료보험 제도로써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 보험이다.
-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은, 본래, 의료보험의 보험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시읍면의 선택에 의해, 보험 「료」의 형식을 뽑는 것 외에, 징수상의 편의로서 보험 「세」의 형식을 뽑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세의 과세액은, 기초 과세액(의료분)과 개호 납부금 과세액(개호분)의 합산액이며, 각각의 내역은 시읍면의 선택에 의해 「소득비율」 「자산비율」 「피보험자 균등할」 「세대별 평등비율」의 구성으로부터 된다.

항 목	내 용
과세 단체	시읍면
납세의무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
세율	시읍면마다의 연간의 의료 급부비, 피보험자의 소득 및 피보험자 수단계에 의해 변동
징수 방법	보통 징수, 특별 징수
부과기일	4월 1일
납기	보통 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한다(8기, 10기가 많다)

헤세이18연도(2006년)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 보험세의 상황등

	보 험 료	보 험 세	합 계
시읍면수	238 단체	1, 589 단체	1, 827 단체
수입액	17, 244억엔	19, 901억엔	37, 145억엔

※ 특별구, 일부 사무 조합등을 구성하는 시구읍면은 각각 1 시읍면으로서 집계

Ⅲ. 법정외세

1. 법정외세란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목(법정세)이외에 조례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법정외세라 함
- 2000년도에 지방분권일괄법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정외보통세 허가제가 동의를 요하는 협의제로 변경되고, 법정외목적세 신설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 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외세 신설이나 검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 법정외세의 종류 및 규모

- 헤세이18연도 결산액 560억엔 (지방세수액에 차지하는 비율 0.15%)

1) 법정의 보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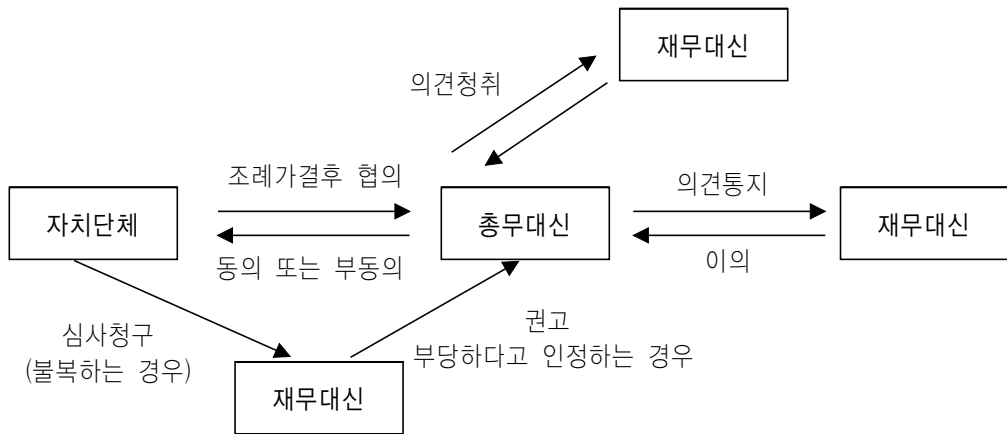
(헤세이 18년도 결산액) [단위 : 억엔]

[도도부현]		
석유가격 조정세	오кина와현	10
핵연료세	후쿠이현, 후쿠시마현, 에히메현, 사가현, 시마네현,시즈오카현, 카고시마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홋카이도,이시카와현	224
핵연료등 취급세	이바라키현	11
핵연료 물질등 취급세	아오모리현	149
임시 특례 기업세	카나가와현	63
[시읍면]		
자갈 채취세등	조요우시(교토부), 나카이마치(카나가와현), 산보쿠마치(카나가와현)	0.4
별장등 소유세	아타미시(시즈오카현)	6
역사와 문화의 환경세	다자이후시(후쿠오카현)	0.6
사용필 핵연료세	사츠마 센다이시(카고시마현)	3
협소 맨션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집합주택세	토시마구(도쿄도)	3

2) 법정의 목적세

[도도부현]		
산업 폐기물세등	미에현, 토토리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아오모리현,이와테현, 아키타현, 시가현, 나라현, 니가타현, 야마구치현, 미야기현, 교토부, 시마네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카고시마현, 쿠마모토현, 미야자키현, 후쿠시마현, 아이치현, 오кина와현, 홋카이도,야마가타현, 에히메현	65
숙박세	도쿄도	13
노리쿠라 환경보전세	기후현	0.2
[시읍면]		
유어세	후지 카와구치코마치(야마나시현)(*2)	0.2
환경 미래세	키타큐슈시(후쿠오카현)	7
사용필 핵연료세	카시와자키시(니가타현)	5
환경 협력세	이제나손(오кина와현)	0.0

3. 법정외세 신설 절차



-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무대신은 법정외세 신설에 동의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61조, 671조, 733조)
- ① 기존세목과 과세표준은 같이 사용하고 주민의 부담이 현저히 과중되는 경우
 - ② 자치단체간 물건의 유통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
 - ③ 1내지 2호이외에 국가경제정책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주요 동의 사항

- 游漁稅	 '01.3.30 동의	- 사용제핵연료세	 '03.9.18 동의
- 임시특례기업세	 '01.6.22 동의	- 산업폐기물세	 '03.10.15 동의
- 산업폐기물세	 '01.9.28 동의	- 협소가호집합주택세	 '03.3.30 동의
- 일반폐기물매립세	 '02.3.29 동의	- 산업폐기물세	 '04.7.30 동의
- 숙박세	 '02.3.29 동의	- 방치자동차등대책추진세	 '04.9.13 동의
- 역사와 문화의 환경세	 '02.7.11 동의	- 산업폐기물감량세	 '04.10.26 동의
- 환경미래세	 '02.9.27 동의	- 산업폐기물세	 '04.10.29 동의
- 산업폐기물처리세	 '02.9.27 동의	- 산업폐기물세	 '05.2.8 동의
- 산업폐기물매립세	 '02.9.27 동의	- 환경협력세	 '05.3.28 동의
- 산업폐기물처분장세	 '02.9.27 동의	- 산업폐기물세	 '05.7.6 동의
- 승안환경보전세	 '03.2.19 동의	- 산업폐기물세	 '05.11.30 동의
- 산업폐기물세	 '03.5.13 동의	- 순환자원이용촉진세	 '06.3.23 동의
- 산업폐기물세	 '03.7.15 동의	- 산업폐기물세	 '06.3.23 개시
- 사용제핵연료세	 '03.9.18 동의		(협의중)